

제2555호
2017. 12. 14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 편집인: 공 보 실 장 류 용 결
 전화: 3396-4965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공 고

제2017-875호 :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
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 ●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875호

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

『영유아보육법』 제24조 및 『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』 제14조 ~ 제16조에 따라 「서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」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7. 12. 14.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규 모(㎡)	아동현황 (정원)	개 원	비 고
신 당 5 동 어 린 이 집	중구 퇴계로88가길 8-10	858.22㎡	170명	82.11.8.	시간연장

2. 위탁 기간 : 계약일로부터 5년

3. 신청 자격

가. 법인 또는 단체 :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나. 개 인 :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(단, 공고일 현재 민간·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)

다. 공 통 : 운영체의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

4. 신청 제외 대상

- 가. 『영유아보육법』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나.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- 다.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(시정명령 제외)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
- 라. 운영주체의 지도·감독시 공신력,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
- 마.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

5. 신청서 접수

- 가. 공고기간 : 2017. 12. 14.(목) ~ 2018. 1. 5.(금)
- 나. 접수기간 : 2017. 12. 27.(수) ~ 2018. 1. 5.(금) 18:00까지
- 다. 접수장소 : 중구청 여성가족과 (본관 1층)
- 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(월~금, 09:00~18:00)
(※토요일·공휴일 및 우편, 택배,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)
- 마. 제출서류

구분	서류항목	운영체			비고
		법인	단체	개인	
개별사항	■ 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(법인 인감증명서 첨부)	○			
	■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○		
	■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		
	■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			○	
공통사항	■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				※첨부의 제출서식 의거작성
	■ 이력서, 자기소개서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				
	■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				
	■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				
	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				
	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				
	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합산)				
	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				
	■ 자부담 승낙서				
	■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				
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(평가 등)					

바. 제출부수 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8부 (원본 1부, 사본 17부), 요약서 (18부, 3~5페이지 분량)

※ 쪽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)는 원본에만 첨부

-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, 쪽 표시, 목차 라벨 표시, 반드시 제본
- 면접심사 발표용 PPT를 2018. 1. 10.(수) 18시까지 e-mail 제출

6. 사업설명회 : 생략

※ 구청방문시 시설개요, 위탁시설 업무, 위탁절차,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

7. 위탁조건

- 가.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
- 나.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시간연장·다문화아동)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
- 다.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- 라.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,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, 중구 영유아보육조례, 위·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(위탁의 취소 및 해지)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
- 마.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「**어린이집 사무 위·수탁계약서**」로 별도 계약 체결

8.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

- 가. 선정방법 :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
(※ **심사일은 별도 통지**)
- 나. 심사항목 : 5개 분야
 -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,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, 운영체의 공신력, 운영체의 재정능력
 - ※ 「**2017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(신규·변경) 공통심사 기준표 항목**」 참고
- 다. 면접방법 : 법인·단체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(PPT발표)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(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)
- 라. 결과발표 :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

9. 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**제출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**
- 나.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,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
- 다.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라.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
- 마. 법인·단체(개인)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 실시함.
- 바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제 선정을 무효로 함
- 사.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「고시/공고」에 공고문과 게재 함
- 아.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(3~5페이지 분량)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.
-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(☎02-3396-5412)로 문의